

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

1. 자치구(구청장) 관련 조문 정비(안 제7조, 제10조, 별표, 별지서식)

가. 개정 이유

- 법 개정으로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수립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주민 협의회 설립 승인 및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 신청 등 관련 규정과 서식에 자치구(구청장)를 반영하려는 것임

나. 개정 내용

- 주민협의회 설립 승인 및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 신청 관련 규정과 서식 등에 자치구(구청장)를 추가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농촌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 내에서도 농촌공간계획 관련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수행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

2.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 명칭 변경 및 제외요건 신설(안 제3조, 제12조)

가. 개정 이유

- 법 개정에 따라 “농촌위해시설”의 명칭이 “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”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,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해당 시설에서 제외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

※ 근거법령 : 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4호

나. 개정 내용

- 종전 “농촌위해시설”의 명칭을 “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”로 변경하고, 대기·수질 배출허용기준,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지속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시설 등은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적법하게 운영되는 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